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채명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50
----------	-----

발의연월일 : 2013. 11. 14.

발의의원 : 채명지 의원, 김기석 의원  
(등 찬성의원 8인)

## 1. 제정이유

자전거 이용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교통난 해소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권리와 책무(안 제3조 ~ 제4조)
-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안 제5조)
- 자전거주차장 설치 및 유지관리·운영(안 제6조 ~ 제7조)
- 군민자전거 운영(안 제9조)
- 자전거대여소 등의 설치(안 제11조)
- 민간단체 등 지원(안 제12조)
-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안 제13조)
- 위탁운영(안 제15조)
- 조례 시행에 필요한 규칙 제정 규정(안 제16조)

## 3. 제정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20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7조, 제11조

달성군 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교통난 해소 및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 관리를 말한다.
4.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를 거치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군민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 자전거 주차 등 자전거 보관 장치를 구비하여 자전거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군민자전거”란 군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달성군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군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수립에 의견을 제시 할 권리
3.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 할 책무
4. 자전거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책무

**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자전거주차장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원, 하천, 공공기관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및 운영)** ① 자전거주차장 관리는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④ 자전거 소유자는 주차 시 잠금장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도난 및 파손 등의 책임은 소유자가 진다.

**제8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9조(군민자전거의 운영)** 군수는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교통 분담률을 높이기 위하여 군민자전거를 운영 할 수 있다.

**제10조(시범기관의 지정 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대여소 등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전거대여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군수는 자전거타기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주차장, 군민자전거, 자전거보관소·대여소 등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⑤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자격, 선정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도로법」 제20조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국도의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계획 중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가 읍·면 지역의 국도·지방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계획이 시·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자전거횡단도·자전거신호기 및 자전거교통안전표지(자전거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안내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및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등의 노면표지를 말한다)
2.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방호경계턱등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3.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이하 "자전거주차장치"라 한다)
4. 자전거이용자의 휴식소 또는 자전거이용자를 위한 야영장등 기타 자전거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

**제4조(활성화계획의 반영)**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용활성화사업"이라 한다) 추진의 우선순위 분석
2. 자전거도로망등 자전거이용시설상호간의 연계성
3. 철도역·도시철도역·버스터미널등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4. 통학로·통근로등 주요 교통로등에 대한 자전거도로 노선계획
5. 연도별 이용활성화사업의 추진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6. 이용활성화사업의 시행방법
7. 도로의 신설·확장·재정비계획과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의 조성사업과의 연계방안
8. 이용활성화사업의 효과 분석
9.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시 방안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의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①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날부터 14일간 해당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의 경우에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형상·수량 및 제조회사명
2.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보관한 일시
3.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4. 공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처리된다는 뜻
  - 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난 때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 나. 기증, 공공자전거(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활용 또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자전거의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 1. 매각.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의 예에 따르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자전거는 수익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한다.
  - 2. 기증
  - 3. 공공자전거로 활용
  -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자전거나 매각대금을 자전거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특징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등 그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하여도 자전거의 소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관중인 매각대금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된다.
- 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된 자전거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전거인 경우에는 처분과 동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서 명 날 인 서

의원명	서명	날인
채명지	채명지	
김기석	김기석	